

의안 번호	762	<b>[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b> <b>검 토 보 고</b>
----------	-----	--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10. 6. 4 ·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0. 6. 9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10. 6. 21(월)

### 2. 제안이유

- 가. 신설 유곡테니스장에 대한 사용료 부과 규정 마련과 함께 테니스장의 주민 활용을 높이기 위해 사용료 조정 및 사용료 감면 조항을 일부 수정하고,
- 나. 알기 쉬운 용어 사용으로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명백히 함.(안 제2조의2)
- 나. 테니스장 사용료 조정 (안 제7조제1항)
  - 코드당 : 10,000원(3시간기준)⇒2,000원(1시간기준)
  - 월회원(1인기준) : 15,000원⇒10,000원(야간조명포함)
- 다. 60세 이상 노인 사용료 감면 확대 : 30%⇒50%(안 제8조제2호)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

### 4. 근거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5.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6. 참고사항 : 입법예고 의견 없음(2010. 4. 5 ~ 4. 25)**

**7.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유곡테니스장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용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고,
- 테니스장의 주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료 조정 및 사용료 감면 조항을 일부 수정하려는 것임.

나. 이에대한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명백히 함과 동시,
-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를 30%⇒50%로 감면하고 테니스장 사용료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다. 이는

- 우리 중구민에 대한 체육시설의 편의 제공과 함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음.
- 다만,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요율과 테니스장 사용료 조정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사용료)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안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li> <li>2. 성안생활체육공원 조명시설</li> <li>3. 인조잔디 축구장</li> </ol>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강습프로그램 사용료로 구분하여 별표1 내지 별표3과 같이 정한다.</p> <p>③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당해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p> <p>&lt;신 설&gt;</p> <p>④ (생략)</p> <p>제8조(사용료의 감면)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용료 면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 나. (생략)</li> <li>다.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li> <li>2. 사용료 감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유공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 50/100</li> <li>나. 12세 이하의 어린이, 청소년(13세~18세),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30/100</li> </ol> </li> </ol>	<p>제7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시설물별로 구분하여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p> <p>&lt;삭 제&gt;</p> <p>② (현행 제3항과 같음)</p> <p>③ 사용자가 계약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p> <p>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사용료의 감면)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용료 면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 나. (현행과 같음)</li> <li>다. 그 밖에----- -----</li> </ol> </li> <li>2. 사용료 감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 -----, 장애인, 60세 이상 노인 : 50/100</li> <li>나.-----</li> </ol> </li> </ol> <p>&lt;삭 제&gt; : 30/100</p>

현행	개정안
<p><b>제10조(사용의 허가취소 및 정지)</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사용을 허가취소 또는 정지</u>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u>지해한다고</u> 판단될 때</li> <li>2. ~ 4. (생략)</li> </ol> <p><b>제13조(시설의 이용안내)</b>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체육시설별 이용시간 및 이용수칙, 사용료 등 <u>기타</u> 필요한 사항</li> <li>2. (생략)</li> </ol> <p><b>제16조(위탁관리)</b>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u>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u> 사용승인 및 사용료의 징수·감면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위탁한다.</p> <p>③ (생략)</p>	<p><b>제10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b> ①----- ----- -----<u>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u>----- ----- 1.-----<u>해친다고</u> ----- 2. ~ 4. (현행과 같음)</p> <p><b>제13조(시설의 이용안내)</b> ----- ----- ----- 1.----- -----<u>그 밖에</u>----- 2. (현행과 같음)</p> <p><b>제16조(위탁관리)</b>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u>----- ----- ----- 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lt;신설&gt;</p> <p>[별표 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7조제2항 관련)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평일</th> <th style="text-align: center;">토·일·공휴일</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테니스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코트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3시간 기준 사용료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월 자유이용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인 기준 사용료임</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인조잔디축구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체육경기</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00 (35,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0 (50,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시간 기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체육경기 외</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시간 기준</td> </tr> </tbody> </table> <p>팔호안의 요금은 중구지역 이외의 주민(단체포함) 사용시 요금임.</p>	구분	평일	토·일·공휴일	비고	테니스장	코트당	10,000	3시간 기준 사용료임	월 자유이용료	15,000	1인 기준 사용료임	인조잔디축구장	체육경기	25,000 (35,000)	40,000 (50,000)	2시간 기준	체육경기 외	50,000	80,000	2시간 기준	<p>[별표 1]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제2조의2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시설명</th> <th style="text-align: center;">소재지</th> <th style="text-align: center;">주요시설</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원학정</td> <td style="text-align: center;">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1241-1번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국궁장</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성안생활체육공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울산광역시 중구 함월1길 145번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테니스장, 족구장 다목적구장</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태화십리대밭축구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800번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인조잔디축구장</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유곡테니스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동 891번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테니스장</td> <td></td> </tr> </tbody> </table> <p>[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기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평일</th> <th style="text-align: center;">토·일·공휴일</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테니스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코트당</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2,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시간 기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월회원</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10,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인 기준 (야간조명 포함)</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태화십리대밭축구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체육경기</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00 (35,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0 (50,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시간 기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체육경기 외</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시간 기준</td> </tr> </tbody> </table> <p>1. 팔호안의 요금은 중구지역 이외의 주민(단체포함) 사용시 요금임 2. 월회원의 코트 사용은 공휴일을 포함한 월중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예약 행사 및 대회는 우선 사용한다.</p>	시설명	소재지	주요시설	비고	원학정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1241-1번지	국궁장		성안생활체육공원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1길 145번지	테니스장, 족구장 다목적구장		태화십리대밭축구장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800번지	인조잔디축구장		유곡테니스장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동 891번지	테니스장		구분	기준	평일	토·일·공휴일	비고	테니스장	코트당	2,000		1시간 기준	월회원	10,000		1인 기준 (야간조명 포함)	태화십리대밭축구장	체육경기	25,000 (35,000)	40,000 (50,000)	2시간 기준	체육경기 외	50,000	80,000	2시간 기준
구분	평일	토·일·공휴일	비고																																																													
테니스장	코트당	10,000	3시간 기준 사용료임																																																													
	월 자유이용료	15,000	1인 기준 사용료임																																																													
인조잔디축구장	체육경기	25,000 (35,000)	40,000 (50,000)	2시간 기준																																																												
	체육경기 외	50,000	80,000	2시간 기준																																																												
시설명	소재지	주요시설	비고																																																													
원학정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1241-1번지	국궁장																																																														
성안생활체육공원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1길 145번지	테니스장, 족구장 다목적구장																																																														
태화십리대밭축구장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800번지	인조잔디축구장																																																														
유곡테니스장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동 891번지	테니스장																																																														
구분	기준	평일	토·일·공휴일	비고																																																												
테니스장	코트당	2,000		1시간 기준																																																												
	월회원	10,000		1인 기준 (야간조명 포함)																																																												
태화십리대밭축구장	체육경기	25,000 (35,000)	40,000 (50,000)	2시간 기준																																																												
	체육경기 외	50,000	80,000	2시간 기준																																																												

현 행						개 정 안																																																					
<p><b>[별표 2]</b></p> <p>부대시설 사용료(제7조제2항 관련) (단위 :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세부시설</th> <th>사용료</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성안생활체육 공원</td> <td>조명시설 (구장조명시설)</td> <td>5,000</td> <td>종목별 코트당 1회(3시간이내) 기준 사용료임</td> </tr> </tbody> </table>						구 분	세부시설	사용료	비 고	성안생활체육 공원	조명시설 (구장조명시설)	5,000	종목별 코트당 1회(3시간이내) 기준 사용료임	<p><b>[별표 3]</b></p> <p>부대시설 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단위 :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세부시설</th> <th>사용료</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테니스장</td> <td>조명시설</td> <td>5,000</td> <td>종목별 코트당 1회(3시간 이내) 기준 사용료임</td> </tr> </tbody> </table>						구 분	세부시설	사용료	비 고	테니스장	조명시설	5,000	종목별 코트당 1회(3시간 이내) 기준 사용료임																																
구 분	세부시설	사용료	비 고																																																								
성안생활체육 공원	조명시설 (구장조명시설)	5,000	종목별 코트당 1회(3시간이내) 기준 사용료임																																																								
구 분	세부시설	사용료	비 고																																																								
테니스장	조명시설	5,000	종목별 코트당 1회(3시간 이내) 기준 사용료임																																																								
<p><b>[별표 3]</b></p> <p>강습프로그램 사용료(제7조제2항 관련) (단위 :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주2회</th> <th>주3회</th> <th>주4회</th> <th>주5회</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테니스</td> <td>주간반 (09:00~18:00)</td> <td>90,000</td> <td>100,000</td> <td>110,000</td> <td>120,000</td> <td rowspan="2">1인 1회 20분 강습</td> </tr> <tr> <td>조기·야간반 (주간 외 시간)</td> <td>100,000</td> <td>110,000</td> <td>120,000</td> <td>130,000</td> </tr> <tr> <td>기초반</td> <td>60,000</td> <td>70,000</td> <td>80,000</td> <td>90,000</td> <td>1팀(4인)1회 1시간 강습</td> </tr> </tbody> </table> <p>단, 1인 동시 2종 이상의 강습프로그램 수강시, 강습료가 낮은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50% 할인한다.</p>						구 분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비 고	테니스	주간반 (09:00~18:00)	90,000	100,000	110,000	120,000	1인 1회 20분 강습	조기·야간반 (주간 외 시간)	100,000	110,000	120,000	130,000	기초반	60,000	70,000	80,000	90,000	1팀(4인)1회 1시간 강습	<p><b>[별표 4]</b></p> <p>강습프로그램 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기준 : 월사용료, 단위 :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주2회</th> <th>주3회</th> <th>주4회</th> <th>주5회</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테니스</td> <td>주간반 (09:00~18:00)</td> <td>90,000</td> <td>100,000</td> <td>110,000</td> <td>120,000</td> <td rowspan="2">1인 1회 20분 강습</td> </tr> <tr> <td>조기·야간반 (주간 외 시간)</td> <td>100,000</td> <td>110,000</td> <td>120,000</td> <td>130,000</td> </tr> <tr> <td>기초반</td> <td>60,000</td> <td>70,000</td> <td>80,000</td> <td>90,000</td> <td>1팀(4인)1회 1시간 강습</td> </tr> </tbody> </table> <p>단, 1인 동시 2종 이상의 강습프로그램 수강시, 강습료가 낮은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50% 할인한다.</p>						구 분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비 고	테니스	주간반 (09:00~18:00)	90,000	100,000	110,000	120,000	1인 1회 20분 강습	조기·야간반 (주간 외 시간)	100,000	110,000	120,000	130,000	기초반	60,000	70,000	80,000	90,000	1팀(4인)1회 1시간 강습
구 분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비 고																																																						
테니스	주간반 (09:00~18:00)	90,000	100,000	110,000	120,000	1인 1회 20분 강습																																																					
	조기·야간반 (주간 외 시간)	100,000	110,000	120,000	130,000																																																						
	기초반	60,000	70,000	80,000	90,000	1팀(4인)1회 1시간 강습																																																					
구 분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비 고																																																						
테니스	주간반 (09:00~18:00)	90,000	100,000	110,000	120,000	1인 1회 20분 강습																																																					
	조기·야간반 (주간 외 시간)	100,000	110,000	120,000	130,000																																																						
	기초반	60,000	70,000	80,000	90,000	1팀(4인)1회 1시간 강습																																																					